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3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5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4. 7.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3,243,220원(가산세 57,031,7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6,600,080원(가산세 2,978,940원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30

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11. 5.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수는 10,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였다가, 2012. 10. 5. 증자를 통하여 총 발행주식 수는 15,000주로 증가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8.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10,000	100%	10,000	100%	15,000	100%	15,000	100%
원고	5,000	50%	4,500	45%	10,000	66.67%	15,000	100%
C	5,000	50%	4,500	45%	5,000	33.33%		
D	-		1,000	10%				

다. 피고는 원고가 2013. 8. 31.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장부가액 20,433,766,614원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율 증가분 33.33%를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2015. 11. 9. 원고에게 취득세 193,243,2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600,0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개인 회사처럼 보일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보에 지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30

이 있으리라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1. 9.경 C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율을 50% 아래로 낮추기 위하여 원고 주식 500주와 C에게 신탁한 주식 500주를 D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며, 2012. 10.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끌어올린 후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수하였고, 2013. 8. 31. 이 사건 회사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명의신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C에게 신탁한 주식 5,000주를 반환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C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하는 '취득'이 아니고, 원고는 설립 당시나 2013. 8. 31.에나 계속하여 지분비율이 100%여서 원고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30

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조).

2) 갑 제4 내지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7. 10.경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08. 1.경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 12.경부터 위 상호를 사용하여 떡볶이, 어묵, 순대, 튀김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 3. 기준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총 4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였다. 원고의 사업은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각종 언론매체들에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어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텔레비전 예능 · 교양 프로그램, 블로그 등을 통하여 유명 떡볶이집으로 소개되었다.

② C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로 입금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주 10,000주(주당 발행가액 35,000원)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원고만 2012. 10. 4. 신주 5,000주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30

청약하여 배정받았고 C은 이 사건 회사에 신주 인수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당기순이익은 5억 6,670만 원이었고, 2012년 당기순이익은 42억 6,738만 원이었으며, 2013년 당기순이익은 46억 1,662만 원이었다.

④ C과 원고는 2013. 8. 31.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10% 지분 명의자였던 D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2. 7. 31.자 중간배당으로 6,768,000원(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을 수령하였고, 2013. 4. 24. 원고와 C에게 각 3,384,000원씩을 입금하였다.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2. 7. 31.자 중간배당으로 30,456,000원, 2013. 3. 31.자 정기배당으로 225,882,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2013. 9. 3. 1억 8,000만 원, 2014. 4. 1. 79,722,000원을 입금하였다.

⑥ C은 2013. 9. 10.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4,193,750원(설립 당시 5,000주에 대한 것)과 증여세 36,064,859원(D으로부터 C으로 명의가 이전된 500주에 대한 것)을 신고·납부하였고, 동대문세무서장은 C에게 위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9. 10. 삼성세무서장에게 'D, C으로부터 반환받은 배당금은 원고의 배당소득이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원고의 배당소득이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8. 31. C으로부터 명의신탁 주식 5,000주를 반환받았거나 C 명의의 주식에 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30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개인사업체로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였고, 가맹사업까지 성공하여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였으며, 원고가 사용하던 'F'라는 상호는 널리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떡볶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떡볶이 사업이 계속 성장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프랜차이즈 상권개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에 새로 합류한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를 넘겨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C은 원고와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주식 5,000주를 무상으로 반환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배당금의 반환시기가 다소 늦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C이 실제로 주식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의 외관을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 2012년의 당기순이익은 42억 6,738만 원이었고 주당순이익이 약 284,492원(42억 6,738만 원÷15,000주)이었음에도 C은 주당 35,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회사가 보유한 현금·예금의 규모나 당기순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분율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C이 실질주주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30

③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및 2013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중 회사 사옥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장부가액 약 203억 원, 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었다) 160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추진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실질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3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끝.